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19. 9. 23(월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	녹색도시과	담 당 자	• 과장 안경호, 사무관 심인보, 주무관 강명준 • ☎ (044) 201-3745, 3746
보 도 일 시		2019년 9월 24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4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	

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

- 2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-

□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**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**되어 **축사 등 동식물 시설**로 인해 **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**될 전망이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**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, 사업요건을 완화**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**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**이 **국무회의를 통과**(9.24)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**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**으로

○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* 대상이 되는 **밀집훼손지**의 **규모**를 **완화**하였다.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㎡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,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면적이 **3천㎡ 이상인 여러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**(전체 면적은 1만㎡ 이상)하여 **정비사업을 시행**할 수 있게 하였다.

*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(30% 이상)를 공원·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**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**하는 제도

** GB 내 동식물시설이 밀집한 토지(1만㎡ 이상 → 3천㎡ 이상으로 개정)

○ 또한,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'16.3.30.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로 하였으나, 이를 **'16.3.30.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**하였다.

○ 아울러,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**밀집훼손지 면적의 5%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**할 수 있도록 하였고,

○ **정비사업 방식**도 기존의 **환지방식**에 추가하여 **수용방식, 혼합방식**으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한편, GB 해제 후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**자동 환원되는 기간이 2년 → 4년으로 연장**되고, **재난의 발생**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**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간 추가로 연장**할 수 있도록 **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(4.23 공포, 10.24 시행)**됨에 따라

○ **재난의 발생, 매장문화재 발굴허가**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**1년간 연장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**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동식물시설**로 인한 **GB 훼손지가 대폭 정비**되고, **GB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**될 것으로 기대하며,

○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심인보 사무관(☎ 044-201-374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